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46
----------	-------

발의연월일 : 2026. 6. 9.

발 의 자 : 유상범 · 강대식 · 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훈 · 김석기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윤영석 · 윤재욱 · 윤한홍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이성권 · 이소희 · 이양수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이철규 · 이현승 · 임이자
임종득 · 장동혁 · 정동만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최은석 · 최형두 · 한기호
한지아 · 김태규 · 유의동
윤용근 · 이진숙 의원
(110인)

제안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또한,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보전 조치 없이 개표가 강행되었고, 투표함 보전을 요구하던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참관·입회 절차 없는 투표

합 반출·이송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뿐만 아니라, 봉인지 훼손, 비정상적 투표용지 전달, 타지역 투표지 발견, 이상 개표정보,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정당 투표 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의혹 등 선거관리 전반에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고, 헌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계하였음.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로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참정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고, 투표부터 개표까지 선거 전반에 걸쳐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개표 중단 또는 보류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경위가 무엇인지,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전하였는지, 투표함 반출·이송·개봉 과정에서 참관·입회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였는지,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국민을 대상으로 경찰을 통해서 과잉 진압 등 위법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그러나 수사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선거사무 종사자, 경찰 등 관계기관이 포함될

수 있어 통상 수사기관만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 의혹, 국민 참정권 침해, 투표함·투표지 관리 하자, 개표 검증 하자, 관련 은폐·무마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 발생 이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 보전을 요구하던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투표함의 불법적 반출·이송 의혹, 참관·입회 절차 미보장, 봉인지 훼손, 비정상적 투표용지 전달, 타지역 투표지 발견, 이상 개표정보,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정당 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었거나 수사과정에

서 인지된 동일·유사한 선거 부정 의혹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기간 내 미요청 시 국회부의장의 요청,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미의뢰 시 의뢰 간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의 임명 및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검사 1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의 수사 규모를 규정함(안 제8조).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고,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회계보고, 재판권 및 재판관할,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에 대한 벌칙, 공무원 의제, 형벌 감면 및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부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선거 부정 의혹 사건
2. 제1호의 사건 등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음에도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를 즉시 보전하지 아니하고, 개표 중단 또는 보류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하였다는 의혹 사건
3. 투표함과 투표지의 보전을 요구하던 국민에 대하여 과도한 공권력이 행사되었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지휘·협조 아래 투표함이 불법적으로 반출·이송되었다는 의혹 사건
4. 투표함·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의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

에서 정당한 참관·입회 절차가 보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송 경로 이탈, 봉인지 훼손, 봉인지 번호 불일치, 영상자료 미보전 등으로 투표함 관리의 동일성·무결성·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 사건

5.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가 지퍼백, 종이봉투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관·전달·이송되었거나, 타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투표용지·투표지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건
6. 송도1동·송도2동 등 다수 지역에서 후보자별 관내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공개된 것과 관련한 입력·집계·검증 과정의 문제, 무효표 또는 이상 투표지의 유효표 처리 등 개표 관리와 관련한 의혹 사건
7. 투표용지 중복 수령,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본인 확인 절차 하자, 정당 투표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또는 공백,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등 투표 준비·투표 절차·참관 절차와 관련한 의혹 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선거사무 종사자, 경찰 등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진상규명 또는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무마·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 각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 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의혹 사건, 증거를 인멸

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11.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었거나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선거 부정 의혹 사건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관계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에 또

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국민의힘은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 한 사람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를 합산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과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그 밖

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선거관리 자료, 투표록, 개표록, 선거인명부, 통합선거인명부 조회 기록, 투표용지 인쇄·납품·배부 기록, 투표함 인수인계 기록, 봉인지 번호 및 훼손 기록, CCTV, GPS, 블랙박스, 전산시스템 로그, 개표분류기 로그, 심사계수부 기록, 이의제기서, 사고보고서, 내부 보고서, 지시문서, 전자문서, 영상자료, 사진자료, 그 밖의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 또는 법원의 영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사본 제작, 전자정보 복제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30명 이내로 한다.

⑥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인쇄업체, 운송

업체, 전산시스템 운영업체, 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이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을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건은 특별검사에게 이첩된 것으로 본다.

③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수사 또는 공소를 수행한 검사,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특별검

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수사 또는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군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 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수사 또는 공소유지의 필요성, 사건 상호 간 관련성 등에 비추어 다른 기관이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를 합산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후보자 중 연장자 순으로 5명이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

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

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2조에 따라 모든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공소제기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6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감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중 제8조제6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8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모든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3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

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수사기관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및 그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또는 공소유지 중인 경우에는 특별검사가 사건의 이첩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 또는 특별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①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0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적용에 따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10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